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 Vol. 7

August 11, 2022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7.)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 내용
I. 보도자료	
공정위, 가맹분야 과징금고시 개정 7. 5.	• (이슈) 가맹분야 과징금고시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2. 7. 5.부터 시행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 사례 선정 7. 6.	• (이슈) 2022년 상생협력 우수 사례 선정 • (주요내용) 공정거래조정원은 7. 6.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5개 가맹본부를 「2022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
기재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7. 6.	• (이슈)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 (주요내용) 7. 6.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가 개최됨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7. 8.	• (이슈) 납품단가 조정 관련 인천지역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공정위는 7. 8.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인천에서 개최

이슈	주요 내용
개정 하도급법 및 동 시행령 시행 7. 12.	• (이슈) 개정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 (주요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의 심사(청구)를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22. 7. 12.부터 시행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7. 18.	• (이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 (주요내용)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 18.부터 9. 7.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7. 18.	• (이슈)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7. 18.부터 9. 30.까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민관 협의체를 통해 SW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7. 21.	• (이슈) 민관 협의체를 통해 SW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는 과기정통부, 중기부 및 기타 유관기관들과 함께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 예방활동, 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
결정문 등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7. 21.	• (이슈) 주요 결정문 데이터 제공 •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공정위, 개보위, 국민권익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밝힘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7. 26.	• (이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 (주요내용) 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오픈마켓 관련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7. 27.	• (이슈)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2. 8. 8.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공정위, 가맹사업법 유권해석 관련 해명 7. 27.	• (이슈) 가맹사업 등록요건 관련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1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 운영기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명

이슈	주요 내용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7. 29.	• (이슈) 사건절차규칙 개정 • (주요내용) 6. 13.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 29.부터 시행됨
II. 주요 소식	
유럽의회, 디지털 규제법안 승인 7. 6.	• (이슈) 유럽의회 디지털 규제법안 승인 • (주요내용) 유럽의회가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승인
공정위,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시동 7. 11.	• (이슈) 전자상거래 마케팅 규제 • (주요내용) 공정위는 최근 눈속임 마케팅(소위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발주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경제형벌 규정 개선 예고 7. 14.	• (이슈)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등 경제형벌 완화 • (주요내용) 정부는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하여(법무부차관, 기재부 1차관 공동단장)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개선을 예고
경제법 처벌규정 완화 추진 7. 18.	• (이슈) 경제법 처벌규정 완화 방안 • (주요내용) 법무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는 경미한 경제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정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조사 정례화 7. 19.	• (이슈) 아파트 발주 공사 입찰담합 제도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국토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공정위, 앱마켓 규제 개선 착수 7. 22.	• (이슈) 앱마켓 규제 개선 착수 • (주요내용)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앱마켓 규제개선에 착수
공정위,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 개정 검토 7. 25.	• (이슈)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이슈	주요 내용
공정위, 독과점 남용·담합 행위 집중감시 등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7. 27.	• (이슈)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및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 집행을 개선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공정위,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 개최 7. 29.	• (이슈) 온라인플랫폼 규제 완화 • (주요내용) 공정위는 내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미국, 외국인 총수지정 반대 의사 표명 7. 29.	• (이슈) 외국인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 외국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III. 국회 발의법안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경만 의원안) 국회제출</u> 7. 20.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소속 김경만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정태호 의원안) 국회제출</u> 7. 21.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소속 정태호 의원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u>하도급법 일부개정안(황운하 의원안) 국회제출</u> 7. 22.	• (이슈)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소속 황운하 의원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u>공정거래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황운하 의원안) 국회 제출</u> 7. 25.	• (이슈)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관련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2년 Vol. 7)

I. 보도자료

1. 공정위, 가맹분야 과징금고시 개정 (7. 5.)

-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2. 7. 5.부터 시행. 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
 - 공정위 소관 다른 분야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 구체적으로, (i)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범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하고, (ii)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세부 규정

2. 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 사례 선정 (7. 6.)

- 공정거래조정원은 7. 6. 우수한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5개 가맹본부를 최초로 「2022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
- 선정된 가맹본부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기재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7. 6.)

- 기재부는 7. 6.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였고, 과기정통부 2차관, 고용부 차관, 공정위·방통위·개보위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등이 참석하여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함
-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기로 하였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
 -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i)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ii)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 강화
 -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

- 관계부처는 7. 6.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

4.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관련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7. 8.)

- 공정위는 7. 8. 인천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 설명회는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를 다루는 1부와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음
 - 1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와 기술유용 방지 제도 등 최근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하도급법상 제도에 관하여 설명
 -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활용방법 등 최근 공정위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관하여 논의

5. 개정 하도급법 및 동 시행령 시행 (7. 12.)

-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7. 12.부터 시행됨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심사 청구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법 3조의2, 시행령6조의2)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 하도급법에 맞추어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함(법 3조의2, 시행령 6조의3)
 -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부당한 대금결정 방지를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규정(제6조 제1항 제8호)
- 공정위는 자문위원의 위촉 등 새로운 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힘

6.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7. 18.)

-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방지하고자, 7. 18.부터 9. 7.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함
 -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

7. 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7.18.)

- 공정위는 7. 18.부터 9. 30.까지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함
- 이번 실태조사는 주로 (i)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ii)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iii)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임

8. 민관 협의체를 통해 SW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7. 21.)

- 공정위는 과기정통부, 중기부 및 기타 유관기관들과 함께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 예방활동, 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함
 -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하여 SW산업 분야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논의하고,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의 예방활동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
 - **(One-Stop 지원)** 지원반은 정기 회의를 통해 KOSA를 통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할 예정임.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하는 SW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임
- * 공공 SW 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사건은 중기부가 담당
- **(교육 등 예방활동 확산)**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위·중기부의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에 대한 기업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또한 공정위와 과기정통부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와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임

9. 위원회 결정문 개방으로 행정문서 개방 본격화 (7. 21.)

-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3개 위원회(공정위, 개보위, 국민권익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각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한다고 밝힘
- 공정위 관계자는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에 대해 KDI 등 연구기관과 빅데이터·AI 신생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구축 중인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과의 연계를 통해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임을 밝힘

10.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7. 26.)

-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에 급증하였음(2017년 12건, 2018년 17건 → 2020년 73건, 2021년 103건)
- 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 특히 오픈마켓 관련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
 - **(사례 1)**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유의사항) 오픈마켓은 조치 전 입점업체에게 절차 및 이유를 고지, 소명기회 부여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줄이고, 입점업체는 지식재산권 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 **(사례 2)**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유의사항) 오픈마켓은 정산기준·예상처리기간·관련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정산요구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입점업체는 평소 관련절차를 숙지하고 필요 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산처리 요구
 - **(사례 3)**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를 부과
(유의사항) 오픈마켓은 광고 서비스 비용 관련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 초과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발생 방지시스템을 마련하며, 입점업체는 광고서비스 사용법, 비용정산방식 및 광고비 발생내역을 확인할 필요

- (사례 4)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환불요청수용
(유의사항) 오픈마켓은 환불요청 수용 전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살펴보고, 입점업체는 수시로 환불 신청 여부를 체크하여 과실여부를 신속하게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보상을 요구

11. 공정위,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7. 27.)

- 공정위는 8. 8. 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조사 내용은 (i)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ii)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iii) 거래관행 개선정도, (iv)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으로 12월 경 결과 발표 계획

12. 공정위, 가맹사업법 관련 해명 (7. 27.)

- (언론보도) 한 언론은 공정위가 작년 11. 17.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의 유권해석을 올해부터 달리하여, 직영점을 운영해오던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후 새롭게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등록을 불허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과 예측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함
- (공정위 해명) 공정위는 지금까지 (i) 자기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해 오던 개인이 동종업종에서의 가맹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고 가맹사업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하였고, (ii) 사업을 하던 개인이 가맹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 간에 사업상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쳐 동종업종에서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

13.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7. 29.)

- 공정위가 6. 13.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7. 29.부터 시행됨
- 위 개정안은 사건처리를 효율화하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충실한 의견청취절차 운영) 위원회 심의 개최 전,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위원회 신고서식 제개정) 손쉬운 신고서 작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신설하고, 별도 양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서 및 재신고 관련 서식 마련
 - (경고기준 정비)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경고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 추가(건설입찰의 경우 400억원, 그 밖에 물품구매, 기술용역 등 입찰의 경우 40억원에 미달할 것)
 - (전원회의 심의 기준 조정)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 기준을 200억원에서 2.5배 상향 조정하고, 위반금액, 거래규모 등의 산정이 어렵거나 위반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서 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II. 주요 소식

1. 유럽의회, 디지털 규제법안 승인 (7. 6.)

- 유럽의회는 7. 5.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와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를 모두 승인하였음
- DMA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연매출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여 해당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규정함
- DSA는 IT기업이 인종차별, 테러, 아동학대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함
- DMA 위반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DSA 위반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됨
- 두 법안은 앞으로 EU회원국(27개국) 승인만 남은 상태로, DSA는 2024. 1.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DMA는 수개월 내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2. 공정위,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시동 (7. 11.)

-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의 용역을 발주하면서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웹 또는 앱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은닉·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심도있게 연구를 진행한 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령 또는 지침의 제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자율규제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임

3.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경제형벌 규정 개선 예고

- 정부는 7. 13. 각 부처 차관급 협의체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법무부차관, 기재부 1차관 공동단장)를 출범시키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제형벌규정의 개선을 시사함
- 경제형벌규정의 개선은 (i)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형벌인지 (ii)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iii)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iv)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v)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닌지 등의 기준에 따라 이뤄질 예정임
- 재계로부터 합리화 요구가 컸던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지정 관련 자료제출을 누락한 총수(동일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및 행정조사 거부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과 상해를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경제법 처벌규정 완화 추진 (7. 18.)

- 상기 범부처 경제형벌규정 개선 TF는 경미한 경제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활용하는 방안)** 공정위 행정조사에 대하여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조사 거부인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 **(형량을 낮추는 방안)** 현재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벌금형을 추가하여,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 **(양벌규정)** 양벌규정이 전체 처벌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2%라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하여 양벌규정에 대한 검토 가능성도 제기됨

5. 정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조사 정례화 (7. 19.)

- 공정위는 국토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 공정위와 국토부는 (i)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ii)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정례화, (iii)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등 방안을 논의함
- 공정위는 국토부와 함께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업할 것이라고 밝힘

6. 공정위, 앱마켓 규제 개선 착수 (7. 22.)

-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앱마켓 규제개선에 착수
- 공정위는 해당 연구 용역을 통해 해외 각국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계획임
 -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해당 연구 용역을 통해 (i)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하며, (ii) 세계 각국의 앱마켓 인앱 결제 문제와 관련한 시정조치, 판결에 대한 종합 정리·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iii) 구글·애플이 각국의 시정조치, 판결에 따라 국가별로 변경한 앱 결제방식이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하며, (iv)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조사 현황을 분석할 예정

7. 공정위,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 개정 검토 (7. 25.)

-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다만, 혈족 범위, 인척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친족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8. 공정위, 독과점 남용·담합행위 집중감시 등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7. 27.)

- 공정위는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및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 집행을 개선하여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납품단가 조정)**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보급하는 등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
 - **(기술유용)** 기술유용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금과 정액과징금을 상향하고 징벌적 배상을 현행 3배에서 10배 이내로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

- **(플랫폼 규제)** 디지털 플랫폼 분야와 관련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 유도
- **(부당지원행위)**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사익편취 제외 대상을 합리화
- **(벤처 규제)**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위해 투자·출자 제한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제공
- **(의무고발요청제도)** 공정위 의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관계부처가 고발요청을 하게 될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절차 개선
- **(전속고발제도)**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고발요청기관과 공정위 간 업무협약을 개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 제도 운용을 위해 합리적인 고발 기준 마련

9. 공정위, 내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소비자분과 회의 개최 (7. 29.)

- 공정위는 내달 초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 및 소비자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논의 할 예정임
- 갑을 분과 및 소비자 분과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민간 자율기구 4개 분과(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중 하나로, 예상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 **(갑을 분과)** (i)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합리화, (ii) 상품 노출 기준 투명화, (iii) 플랫폼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
 - **(소비자 분과)**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10. 미국 정부, 외국인 총수지정 반대 의사 표명 (7. 29.)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올해 4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 미국인을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외교라인을 통하여,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공정위는 최근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 입법예고 시기를 연기

III. 국회 발의법안

1. 하도급법 일부개정안(김경만 의원안) 국회제출 (7. 20.)

- 국회 산자위 소속 김경만 의원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안 제34조의2)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2.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정태호 의원안) 국회제출 (7. 21.)

- 국회 산자위 소속 정태호 의원은 별도의 조정 신청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을 완화하

기 위하여 (i)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주요 원재료의 가격 상승(100분의 3 이상 상승한 경우로 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3조제2항), (ii)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고하도록 의무를 부과(안 제3조의2제2항)하며, (iii)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안 제13조제9항)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3. 하도급법 일부개정안(황운하 의원안) 국회제출 (7. 22.)

- 국회 산자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공정위가 고발하거나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보다 넓게 규정하는(안 제32조제2항 · 제3항 및 제5항)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4. 공정거래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황운하 의원안) 국회 제출 (7. 25.)

-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변화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위가 고발하거나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각 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